



제 410회 국회 (정기회)
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〉

■ 허은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124392호)

2023. 12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허은아의원 등 10인

나. 발의연월일 : 2023. 9. 12.

다. 회부연월일 : 2023. 9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, 약칭 「단말기유통법」이 시행 중임.

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, 수출 시 분실·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,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,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·활성화, 이용자 신뢰 제고,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및 제19조).

Ⅲ. 검토의견

1.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

‘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·운영(안 제9조의2 신설) 및 전문 기관 위탁(안 제19조제2항 신설)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9조의2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

현행	개정안
	<u>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(이하 “안심거래 사업자”라 한다)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</u>

현행	개정안
제19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 <신설>	2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</u> 3. <u>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 ⑥ <u>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·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
□ 검토사항

-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9조의2제1항), 인증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자료 요청 권한 근거(안 제9조의제4항)와 인증 취소

근거 및 사유(안 제9조의2제5항)를 규정하며,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2항).

○ 2019년 기준 약 6,500억원에 해당하였던 국내 중고 휴대폰 유통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는 약 7,700억원 규모(18.4% 증가)로 나타나는 등,¹⁾ 통신기기 가격 부담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.

- 연간 천만 대 이상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다고 추산된다는 의견도 있음.²⁾

○ 그런데 중고 휴대폰 시장의 상당 비중이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하는 만큼, 분실폰·고장폰 등 불법·사기 중고폰 판매 문제와 가짜 부품 사용과 같은 품질 보증 문제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.

- 이에 더해 중고폰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³⁾

○ 이에 개정안은 정부에서 인증한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, 중고 휴대폰 시장을 보다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1) “한국중고폰연합회” 자료를 “보안뉴스, ‘급증하는 ‘중고폰’거래, 나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팔려나간다고?’, 2023.3.13.”에서 재인용

2) 류원호, “[기고]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”, 테크M, 2023.9.4.

3) 보안뉴스, ‘급증하는 ‘중고폰’거래, 나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팔려나간다고?’, 2023.3.13.

-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조건으로는 성능확인서 발급,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비, 일정기간 내 교환·환불 보장⁴⁾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.
- 개정안은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('23.9.21.)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⁵⁾과 함께, 중고폰 거래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및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“개인정보 삭제, 성능 확인서 발급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·공시하여, 중고 단말 거래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 단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하는 바 수용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225

4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」, 2023.7.

5) 고민정의원안, 2120306